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8. 31 선고 2018가단285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선진중공업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8. 31.

주 문

1.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4. 2. 19. 접수 제12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신성철

별지